

통일에 대비한 지식재산권 기반조성전략

북한의 산업재산권 법제 인프라에 대한 이해 중심

제 성 호*

- | | |
|----------------------------|----------------------------|
| I. 서론 | V. 남북한간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및 문제점 |
| II. 지식재산권의 개념 | VI. 남북 지식재산권 기반조성을 위한 실천방안 |
| III. 지식재산권 관련 북한의 법제도 인프라 | VII. 결 어 |
| IV. 남북한의 지식재산권 기반조성의 법적 근거 | |

Abstract

The Question of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Protection and Exchang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For the formation of a single unified "information society" on the Korean Peninsula, we should make mutual recognition and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 possible and establish a common legal framework to realize IPR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Furthermore, we should conduct South-North 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continuously in the field of IPR. Some proposals can be suggested as concrete ideas of inter-Korean IPR's exchanges from the legal or practical perspective.

First, it is desirable that the two Koreas should adopt a charter for the construction of Korean National Information or IPR Community.

Second, the two Koreas should initiate and develop not only inter-Korean human contacts but also technical or material cooperation in the IPR's area.

Third, the two Koreas should also permit and expand direct communication and on-line trade by internet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s a way of laying a foundation for Korean National Information Community.

Fourth, the two Koreas should conclude inter-Korean agreements concerning mutual respect and protection of IPR. By dint of such agreements, each side must fully protect and enforce IPR owned by people of the other side.

Key word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 Korean National Information Community, on-line trade by internet,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WIPO), industrial property rights

* 중앙대학교 법대 교수

I. 서론

지식기반사회 혹은 지식공동체란 생소한 말이 나타난 지도 벌써 여러 해가 지났다. 사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들어와서 지식 내지 정보는 하나의 생산 수단적 혹은 재산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관념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경향은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심화될 것이다. 물론 법적 보호의 가치가 있는 지식이나 정보의 경우가 그러하다는 말이다.

작금 남북한간에 화해·협력이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채택은 그러한 토대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하지만 통일시대에 진입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남과 북이 법적·제도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인 통합이 선행되어야 하는 데, 그러한 여건이 현재로서는 극도로 미비하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남북통합을 촉진하는 길은 한 마디로 말해서 쌍방간에 사람·정보·물자의 교류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남북지식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남북지식공동체 형성의 중심에는 법적 가치가 있는 지식 혹은 지식재산권의 상호 교류·보호가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인식 하에 본고에서는 남북간 경제·사회·문화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북 지식재산권 기반조성의 과제를 주로 법적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식재산권의 개념을 간단히 검토하고 지식재산권 기반과 관련 있는 남북한의 법제와 기구, 그리고 남북 지식재산권 기반조성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로 한다. 이어 남북 지식재산권 기반조성의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제시하기로 한다.

II. 지식재산권의 개념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적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 산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체재산’ 혹은 지적 재산이라고 한다. 이러한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를 총칭하여 지적재산권이라고 한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지식재산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학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¹⁾ 다만 지식재산권이란 용어는 오늘날 지식기반 사회에 있어서 지식의 중요성과 재산적 가치를 강조하는 데 보다 적합한 것이라고 보인다.²⁾

지적재산 내지 지식재산은 첫째, 예술·문학·음악 등을 중심으로 한 정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과 둘째, 새로운 발명·고안 등과 같이 물질문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를 저작권, 후자를 산업재산권이라고 한다.³⁾ 저작권은 지적 활동에 의해 생성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말한다. 산업재산권은 특허발명이나 실용적인 고안, 심미적인 의장(意匠)과 같이 산업상 유용한 ‘신규의 창작’에 대한 권리, 상호·상표·서비스표·영업표 등 ‘영업상 유용한 표지’에 대한 권리로 나뉘어 진다. 즉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호권, 상표권, 서비스표권, 기타 각종의 표지(영업표, 영업명,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겠다.

지식재산권은 그 형식과 구체적인 내용을 불문하고 모두 모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또 동산, 부동산과 같은 일반재산에 비하여 정신적 노고가 투입된 재산으로 인격적 이익 보호가 강조되는 권리라고 할 것이다.

1) 육소영·윤권순, 『북한의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03-13 (서울: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2003); 이한상·김준학, 『산업재산권의 이론과 실무』 (서울: 제일법규, 2001), p. 23 및 책 머리말 참조. 이한상·김준학은 지식재산권이란 개념을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파악한다.

2) 기술의 편익상 본고에서는 지적재산과 지식재산, 지적재산권과 지식재산권이란 개념을 동의어로 사용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 최근 특허청은 이러한 용어 사용을 고집하고 있다.

3)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5정판 (서울: 세창출판사, 2003), pp. 1-2.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의하면,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①문학, 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 ②실연가의 실연, 음반 및 방송, ③인간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④과학적 발견, ⑤의장, ⑥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명칭들, ⑦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⑧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영역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한 기타 모든 권리들을 말한다. 1979년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설립협약 제2조.

Ⅲ. 지식재산권 관련 북한의 법제도 인프라

1. 지식재산권 관련 북한의 법제

1) 북한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제 현황

북한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발명법」, 「창의고안에관한규정」(「발명및창의고안에관한규정」의 개정판),⁴⁾ 「발명및창의고안에관한규정세칙」, 「상표법」, 「공업도안법」, 「상표및공업도안에관한규정」, 「저작권법」 등이 있다. 또 형법에서는 지식재산권의 보호(침해의 처벌)를 명시하고 있다.

우선 국가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북한헌법(1998.9 개정)은 제74조에서 “국민은 과학과 문화예술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명및창의고안에관한규정」이란 법규가 1978년 12월 28일 처음으로 제정되었고,⁵⁾ 이는 1986년 6월 28일 발명위원회에 의해 정무원결정 제45호로 개정되었다. 그런데 이 규정은 그 후 「발명법」과 「창의고안에관한규정」⁶⁾으로 분리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다.⁷⁾ 이 중 「발명법」은 1998년 5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12호로 채택되었고, 1999년 3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07호로 수정·보충되었다. 아직 「창의고안에관한규정」은 우리나라에 소개되고 있지 않다. 한편 1986년에 「발명및창의고안에관한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칙이 규정과 함께 채택된 바 있다.⁸⁾

4) 창의고안이란 용어는 우리의 실용신안에 해당하는 것이다.

5) 이와 관련하여 「발명및창의고안에관한규정」이 1967년에 처음 제정되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특허청, 『북한의 산업재산권 제도안내』(서울: 특허청, 2001.2), p. 13. 하지만 1967년과 1978년 중 어느 입장이 옳은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6) 『민주조선』, 2001년 6월 21일, p. 2.

7) 발명법의 제정으로 종전의 「발명및창의고안에관한규정」이 완전히 효력을 상실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양자간에 충돌하는 조항은 신법인 발명법이 적용될 것이나, 법에서 침묵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일단 규정이 계속 적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북한법에는 불명확성 및 구체성 결여라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상표및공업도안에관한규정」은 1968년 1월 1일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외국기술 및 자본의 유치 필요성에 따라 1983년 5월 2일 전면 개정되어 동년 6월 1일 발효하였다. 이후 1984년 합영법 실시 등 경제개발을 위한 외국기술·자본의 유치를 위해 산업재산권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1986년에 동 규정이 개정되었고, 관리기구의 명칭 변화로 인해 1991년 3월 13일 다시 개정되었다. 이후 「상표및공업도안에관한규정」⁹⁾도 「상표법」과 「공업도안법」으로 분리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상표법」은 1998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결정 제106호로 채택되었고, 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되었다. 「공업도안법」은 1998년 6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결정 제117호로 채택되었고, 1999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호로 수정되었다. 이 같은 분리 입법조치는 대외경제개방 추세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2001년 4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4차 회의에서 저작권법을 채택하였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의 보호대상, 보호범위, 보호기간, 이용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정은 북한당국이 대외적으로 북한 저작물의 무단사용을 방지하고, 저작권 사용료 수익을 국가 수입원으로써 활용하는 한편, 분쟁발생 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내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¹⁰⁾

한편 형법에서는 저작인격권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1999년 8월 11일 개정된 형법은 ‘제5장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하는 범죄’ 중에서 1개 조문을 두어 “탐욕, 질투 그밖에 비열한 동기밑에 저작, 발명, 창의고안, 문학예술작품을 고의적으로 그릇되게 평가하여 묵살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창작품을 자기의 이름으로 발표한 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제98조)고 명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북한에서는 상표법, 과학기술법, 상표및공업도안

8) 「발명및창의고안에관한규정세칙」에 관해서는 박정원, 『북한의 공업소유권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1), pp. 129-145 참조.

9) 「상표및공업도안에관한규정」은 5장 54개조로 되어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 상표와 봉사표시, 제3장 공업도안(우리의 의장에 해당), 제4장 본래명칭(우리의 원산지표시에 해당), 제5장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표법과 공업도안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 규정은 두 법에 의해 대체됨으로써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법리상 상기 두 법에 저촉되지 않는 구규정의 조항들은 상표법과 공업도안법에 대한 시행세칙들이 각각 마련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0) 남우석, “북한의 저작권법 해설,” KOTRA 북한실, 『북한알기(북한경제정보)』 자료 (2001.8.24), p. 1 (http://www.kotra.co.kr/main/trade/nk/research/etc_45.jsp 참조).

에관한규정세칙이 실시되고 있다고 하지만,¹¹⁾ 아직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2) 북한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제의 주요특징

(1) 발명법, 상표법, 공업도안법¹²⁾

북한은 발명에 대해 발명권과 특허권을 부여하는 이중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발명권제도를 기본으로 하면서 여기에 병행하여 특허권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¹³⁾ 발명권과 특허권은 모두 발명에 대한 법적 보호형태로서 ①그 내용과 적용범위, ②국가에 등록보호를 청원하는 신청절차와 방법, ③문건형식, ④심의절차와 기준 등이 거의 같다. 하지만 양자는 그 성격상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다.¹⁴⁾

발명권은 발명자가 가지지만 그 이용권은 국가에 속한다. 반면에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이용권을 특허권 소유자가 독점한다.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보상의 지불조건과 방법은 쌍방의 계약에 의해서 결정하는데, 그 계약서는 발명총국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발명및창의고안에관한규정세칙』 제 11조).

발명권을 받은 사람은 발명권을 마음대로 취소하거나 포기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줄 수도 없다. 그러나 특허권 소유자는 특허권을 포기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나 기관, 기업소 또는 다른 나라에 완전히 팔거나 그 이용권을 일정한 기간 넘겨 줄 수 있다. 다만 다른 나라에서 북한 특허기관에 등록을 하고 특허권을 부여받은 발명을 특허무역을 통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려 할 때에는 그에 대하여 북한 특허기관에 통보할 뿐 아니라

11) 최정희, “공업소유권과 공업소유권보호제도에 대한 일반적 이해,”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제46권 제2호 (2000), p. 65.

12) 이상의 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에 관하여는 육소영·윤권순, 『북한의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연구』, pp. 45-84; 박정원, 『북한의 공업소유권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pp. 38-54; 법무부,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Ⅲ)-상사·경제, 노동관계법』, 법무자료 제216집 (서울: 법무부, 1997), pp. 363-404 참조.

13) 최정희, “공업소유권과 공업소유권보호제도에 대한 일반적리해,” p. 62.

14) 최정희, 위의 글, pp. 61-63 참조.

구매자와 체결하는 계약내용에 대해서도 북한 특허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등록을 받은 특허권이나 그 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시키는 것이므로 응당 그 권리를 부여한 특허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그 어떤 제3자로부터의 특허권 침해현상을 미리 막기 위해서이다.

발명권은 특허권으로 바꿀 수 없지만, 유효기간 안에 있는 특허권은 그 소유자의 요구(신청)에 따라 발명권으로 바꿀 수 있다(발명법 제32조). 특허권은 그 유효기간이 15년이지만, 발명권의 효력기간은 일반적으로 무기한이다. 발명등록과 관련된 비용부담도 근본적으로 다르다. 발명권을 등록할 때에는 신청료나 기타 요금을 물지 않고, 오히려 국가로부터 정치도덕적 및 물질적 특전들이 부여된다(『발명및창의고안에관한규정』 제34조). 반면에 특허권은 신청등록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수속요금(신청료, 신소청원료, 변동통지수속료 등)을 물어야 하며 일단 등록을 한 다음에는 매년 적지 않은 보호연금을 물어야 한다(법 제13조 1문, 『발명및창의고안에관한규정』 제12조).

또 북한은 출원공개제도(出願公開制度)를 발명법 제20조, 『발명및창의고안에관한규정』 제18조와 『발명및창의고안에관한규정세칙』 제46조 본문에 명시하면서도, 법 제20조 2문과 세칙 제46조 단서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출원 발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출원공개원칙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와는 달리 심사청구제도(審査請求制度)¹⁵⁾를 도입하지 않고, 발명권이나 특허권을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청구 절차 없이 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5개월 안에 심의결정을 한다(『발명및창의고안에관한규정』 제22조).

외국인이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권한이 북한당국에 의하여 제한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특허권자는 그의 권리 전부 또는 일정기간 독점실시권을 타 기관, 기업이나 개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양도 시 보상의 지불조건과 방법은 쌍방의 계약에 의해서 결정하는데 이 경우 계약서는 발명총국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발명및창의고안에관한규정세칙』 제11조). 또한 특허된 발명이 국가에 매우 중요한 것일 경우 국가가 특허권을 양도받을 권리나 독점실시권을 가진다(『발명및창의고안에관한규정세칙』 제12조).¹⁶⁾

15) 심사청구제도는 출원 후 일정기간 내(우리 법에서는 출원일로부터 5년 내)에 심사청구의 절차를 밟는 출원에 관해서만 심사하고 그렇지 아니한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서, 모든 출원을 심사하는 방식에 비추어 상당수의 출원이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전체로서 심사의 촉진에 기여하게 된다. 송영식·이상정, 『지적재산법』 (서울: 세창출판사, 1999), p. 71.

그 동안 북한에서는 우리와 달리 상표, 서비스표, 의장제도를 단일법으로 규율해 왔으나, 1990년대 말 상표법과 공업도안법의 제정으로 상표와 공업도안을 분리 규율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하위규정의 정비가 미비하여 종래의 「상표및공업도안에관한규정」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남한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는 「원산지표시」를 북한에서는 「본래명칭」이라는 권리제도로써 인정하고 있다. ‘본래명칭’ 제도는 지리적 표시 또는 원산지 표시보호제도와 유사하며, 등록에 의해 보호하고 있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 다른 나라 기관, 기업소와 공민이 북한에 상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조선말로 써내야 한다(「상표및공업도안에관한규정」 제11조)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또한 북한은 국제상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의정서에 가입하고 있어 마드리드루트에 의해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표출원공고결정제도’가 없는 바, 이에 따라 이의신청제도도 없다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

공업도안은 우리의 ‘의장’에 해당하는 것인데, 남북한간에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 우리는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의장법 제2조 1호)인데 비해, 북한은 ‘공업적 방법으로 생산하려는 제품의 특별한 형태와 색깔, 장식, 색조화 등을 통하여 외형을 새롭게 묘사하는 것’(공업도안법, 제2조, 「상표및공업도안에관한규정」 제30조)으로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종래에는 개인에게는 공업도안권을 인정하지 않고, 공업도안을 유일하게 사용하는 기관, 기업소에게만 권리를 부여하였다(「상표및공업도안에관한규정」 제36조 1문). 그러나 최근 제정된 공업도안법에서는 단체와 공민에게도 공업도안권을 인정하고 있다. 권리보호기간에 관하여는 우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10년인데 비해, 북한은 등록일로부터 5년이다(공업도안법 제35조 1문, 「상표및공업도안에관한규정」 제36조 2문). 물론 연장은 가능하다.

16)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발명법 제31조 1문에서는 “특허권을 받은 과학기술이 사회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국가가 특허권이나 그 과학기술의 이용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2) 저작권법

2001년 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제1장 저작권법의 기본(기본원칙), 제2장 저작권의 대상, 제3장 저작권자(보호기간 포함), 제4장 저작물의 이용(저작권재산권의 제한 포함), 제5장 저작권접권자, 제6장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총 6장 48개조로 구성된 이 법은 북한이 저작권에 관해 제정한 최초의 법이다. 여기서는 저작권법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창작자의 저작활동과 저작권자의 권리(제1조)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개인의 이름으로 창작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것을 창작한 자가 가진다”(제16조). “저작권자는 인격적 권리와 재산적 권리를 모두 가진다”(제13조). 여기서 저작권자에게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은’ 자도 포함된다. 저작권을 양도받은 자에게 재산적 권리와 더불어 인격적 권리도 인정하는 것은 색다른 입법태도라고 하겠다.

저작권자는 인격적 권리로서, 저작물의 발표를 결정할 권리, 저작물에 이름을 밝힐 권리, 그리고 저작물의 제목, 내용, 형식 같은 것을 고치지 못하도록 할 권리 등 3가지를 인정하고 있다(제14조). 그런데 우리 저작권법에 따르면,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은 일정한 경우 제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성명표시권의 경우 “저작물의 성질, 그 이용목적 또는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명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 법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저작권자는 재산적 권리로서, 복제, 공연, 방송, 배포, 전시, 편작·편곡·각색·윤색·번안·번역과 같은 방법으로 개작, 편집 등 7가지 권리를 4개호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다(제15조). 그러나 북한 저작권법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우리 저작권법상의 전송권 개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여권도 인정되고 있지 않는 듯하다.

둘째, 저작권법은 보호대상을 예시하고 있으나(제9조), ‘해당기관’이 저작권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8조). 다만 출판, 발행, 공연, 방송, 상영, 전시 등이 금지된 저작물은 보호되지 아니한다(제6조). 이것은 저작권법의 기본적인 입법태도와 배치된다. 공법상 규제대상인 저작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가 여부는 전연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은 그 품격이나 가치, 공서양속에 반하는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바로 저작물성이 인정되고 있다.

셋째, 저작물을 이용하여 공연, 녹음, 녹화, 방송을 한 자의 권리(제4조 및 제33조)를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저작인접권자 보호규정은 우리 저작권법상의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를 보호하는 것에 상당하는 것이다. 저작인접권자인 공연자에게는 이름을 밝힐 권리(성명표시권)가 인정된다(제34조). 인접권자에게 동일성유지권은 제외하고 성명 표시권만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넷째, 개작하거나 편집한 자는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제19조). 그리고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해당기관이 저작물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제27조). 이는 일종의 법정허락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도 법정허락 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의하면, 법정허락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의 상당액을 공탁함으로써 허용된다. 법정허락 제도가 남한의 것과 유사점은 있으나, 북한 저작권법에서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에 관해서는 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섯째,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50년간이다. 기관이나 단체의 이름으로 창작된 저작물, 그리고 영상저작물은 발표된 때로부터 50년간 보호된다. 다만 보호기간의 기산점을 발표시점으로 잡고 있다(제23조 및 제24조).¹⁷⁾ 저작물은 통상적으로 창작과 더불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창작보다 더욱 객관적 기준이라 할 수 있는 발표를 기산점으로 삼고 있다. 이는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등 나름대로 장점이 있으나 사회주의 시각이 법에 투영된 것이라는 느낌을 준다.

여섯째,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권자가 하며,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제27조). 기관, 기업소, 단체에 소속된 공민이 직무수행으로 창작한 저작물은 그 기관, 기업소, 단체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제28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허가 또는 승인받은 범위에서 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하며(제29

17) 북한의 저작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는 저작물이 발표된 때부터 그것을 창작한 자가 사망한 후 50년까지 보호한다. 공동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는 저작물이 발표된 때부터 마지막으로 남은 창작자가 사망한 후 50년까지 보호한다(제23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으로 창작된 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는 저작물이 발표된 때부터 50년까지 보호한다(제24조).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물이 발표되었거나 창작자가 사망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계산한다(제25조).

조), 저작물의 이용을 허가 또는 승인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작물의 이용을 허가한 저작권자나 승인한 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제30조). 여기서 제3자는 개인 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인지 확실치 않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은 좀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일곱째, 저작물을 이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저작권자에게 해당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 때 요금은 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제31조). 여기서 요금이란 사용료(royalty)로 이해된다. 사용료는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재산권 행사의 결과 그 대가로서 인정되는 개념이다. 사용료의 국가기관에 의한 책정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여덟째, 권리 제한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며, 그 요건도 매우 완화되어 있다(제32조). 예컨대 저작권법 제32조 제5호에 의하면, '저작물을 소개하기 위하여 방송하거나 신문, 정기간행물에 내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한의 필요성, 제한의 범위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런데 우리 저작권법 하에서는 저작자에게 부여된 배타적인 권리는 공익상의 목적 등 일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또 특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될 수 있다. 권리 제한을 폭넓게 인정하게 되면, 저작권 보호의 긍정적인 효과가 퇴색하기 때문이다.

아홉째, 저작권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가 국가의 업무로 되어 있다. 여기에는 권리 보호, 대리기관의 선정, 표절방지 대책, 손해배상 대책, 행정적·형사적 책임 부과 등을 포함한다(제41조 이하).

이 밖에 저작권 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고(제7조), 북한이 체결한 조약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의 저작권은 그 조약에 따라 보호한다(제5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앞으로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은 국제조약에 따라 외국인의 저작물을 보호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비당사국 국민의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북한에서 최초 '발표'된 것은 북한법에 의하여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제5조).

북한은 아직 국제조약 체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아직까지는 다른 국가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는 셈이다. 또 북한에서 최초로 '발표'된 저작물도 거의 없다. 그러므

로 북한이 현재까지는 외국인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발표’라 함은 우리 저작권법상 ‘공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최초 발표가 우리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동시 발행’의 의미를 포괄하는지는 불명확하다. 아마 그렇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2. 지식재산권 관련 북한의 기구

북한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는 우리의 ‘부’(Ministry) 단위인 과학기술위원회와 그 산하조직인 「발명총국」(Invention Office),¹⁸⁾ 그리고 일종의 외국(外局)인 「계량 및 품질 감독국」과 산하의 「상표 및 공업도안처」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명총국은 우리의 특허청에 대응하는 정부기구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위원회는 특허 및 발명 업무전반에 대한 대내외 정책수립 및 조정을, 발명총국은 특허·창의고안·발명에 관한 정책수립 및 집행업무를 관장한다. ‘계량 및 품질감독국’과 ‘상표 및 공업도안처’는 상표 및 공업도안의 정책업무(접수·출원·등록 등)를 소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발명, 특허의 심사업무는 발명총국 산하 발명심의처¹⁹⁾에서, 상표 및 공업 도안에 관한 심사업무는 ‘상표 및 공업도안처’ 소속 상표심사과 및 공업도안심사과에서 각각 관장하고 있다. 상표 및 공업도안 심사관은 약 20여명이며, 특허심사관은 약 60여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에 위조상표 단속을 위해 평양, 양강도, 평안남·북도, 자강도, 함경남·북도, 황해남·북도, 나진·선봉 등 전국 주요도시 및 자유무역지대, 도청소재지급 지역에 위조상표 단속담당 공무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²⁰⁾

18) 발명총국이 설치되기 전에는 과학기술위원회 산하조직으로 ‘발명위원회’라는 것이 있었다. 당시 발명위원회 산하에는 발명심의소가 있고, 그 아래에 행정과, 번역과, 심사과, 항고심판과, 상표과, 공보발간과, 행정지원과가 있었다. 김중효, “상표를 중심으로 한 북한의 산업재산권 제도와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산업재산권 상호보호방안,” 특허청 『특허정보』(1994.5), pp. 50-61 참조.

19) 종전의 발명심의소가 발명심의처로 변경(확대·승격?)된 것 같다. 현재 발명총국 산하에는 발명심의처 이외에도 발명장려처, 특허대리처, 문헌실 등이 있다. 나동규, “북한의 발명권과 특허권에 대하여,” 특허청, 『지식재산21』, 제57호(1999), p. 115.

20) 이은정, “남북교류와 지적재산권의 보호,” 법원행정처,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1)-특

외국인이 북한에서 발명등록이나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평양에 있는 ‘평양발명특허상표대리부’에서 이를 관장하고 있다(발명법 제10조, 규정 제16조, 세칙 25조 참조).²¹⁾ 이와 관련해 북한은 2002년 3월 베이징에 ‘조선준마특허및상표대표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북한은 해외에 있는 동강과학기술자문공사(중국법인)를 업무대행회사로 지정해서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출판지도기관과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이 한다. 출판지도기관과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은 저작권사업체계를 바로 세우고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42조). 출판지도기관과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은 저작권사업에 필요한 대리기관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동법 제43조).

아직 북한에서는 우리의 변리사에 해당되는 법률 직업이 없는 것 같다. 일반 변호사들이 특허소송 등 산업재산권 소송을 수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IV. 남북한의 지식재산권 기반조성의 법적 근거

1. 남북한의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약 가입 현황

북한은 발명 및 특허, 의장 등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국제조약 가입에 대하여는 매우 적극적이다.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1883)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조약의 가입시기가 우리보다 먼저이다. 특히 우리는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는 ‘표장(標章)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1891), ‘의장의 국제기탁에 관한 헤이그협정’(1925), ‘의장의 국제분류에 관한 로카르노 협정’(1958)과 같은 조약에 북한은 이미 가입한 상태이다. 이것은 과학

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제6·7차 회의 결과보고-], 통일사법정책자료 2002-1 (서울: 법원행정처, 2002), p. 112.

21) 장상해, “북한의 산업재산권,” KOTRA 북한실, 『심층기획조사(북한경제정보)』 자료 (2000.8.9), p. 3 (http://www.kotra.co.kr/main/trade/nk/research//etc_26.jsp 참조).

기술발전과 발명사업의 강화에 우선을 두고 있는 북한의 정책목표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산업재산권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국제조약의 가입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은 적어도 북한이 산업재산권제도 개선 및 현대화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겠다.²²⁾

북한은 저작물 보호에 관해서는 국제조약 가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다가 2001년 저작권법을 제정하고 필요한 대내적 조치를 취한 후 2003년 1월 28일자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에 대한 가입서를 기탁하였다.²³⁾ 그에 비해 남한은 1987년에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U.C.C.),²⁴⁾ 그리고 1996년에 베른협약²⁵⁾에 각각 가입한 바 있다.

22) 권규우, “북한 산업재산권제도 현황 및 남북한 산재권 교류협력방안,” 『지식재산 21』, 제64호 (2001), p. 39.

23)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ocs.go.kr>) 새소식 2003년 2월 13일자 자료 참조.

24) 1952년 제네바에서 체결되었다. 베른협약의 저작권 보호 수준이 너무 높아 개발도상국의 가입 기피에 대처하기 위해 성립되었다. 방식주의, 비소급주의, 저작자 생존시와 사후 25년간 저작권 보호기간 등 저작권 보호 수준이 베른협약보다 다소 낮으며, 베른협약 동시가입국 상호간에는 베른협약의 보호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25) 1886년 스위스 베른에서 체결되어 저작권 보호에 관한 기본적 국제조약으로 인정받고 있다. 무방식주의(저작권 발행에 특별한 방식이나 절차가 요구되지 않음), 소급주의(협약가입전의 저작권도 소급 인정), 저작자 생존시와 사후 50년간의 저작권보호기간 등 저작권 보호 수준이 높다.

<표 1>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의 남북한 가입현황(발효시기)

조 약	가입일자	
	남한	북한
· WIPO 설립협약	1979.3.1	1974.8.17
·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1883)	1980.5.4	1980.6.10
· 특허협력조약(PCT, 1970)	1984.8.10	1980.6.10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1891)	-	1980.6.10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1989)	2003.4.10	1989.6.28
· 의장의 국제기탁에 관한 헤이그협정 (1925)	-	1992.5.27
· 의장의 국제분류에 관한 로카르노협정 (1958)	-	1997.6.6
· 상품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NICE 협정(1957)	1998.10.8	1997.6.6
·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1977)	1988.3.28	-
· WTO/TRIPs	1994.12.30	-
· U.C.C. 협약	1987.10.1	-
· 베른협약	1996.8.21	2003.4.28

2. 지식재산권 기반조성 관련 남북한간의 합의 실태

남북한은 1991년 12월 13일 채택되고 1992년 2월 19일 발효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제3장에서 ‘남북교류·협력’이라는 제목 하에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에 합의하고 있다. 특히 제16조에서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

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고 약속하고 있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2조 제2항에서,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 과학·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고, 동 합의서 제9조 제5항에서는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함으로써 지식재산권에 관한 특별협정의 체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후 2000년 6월 ‘6·15 남북공동선언’의 채택을 계기로 다방면의 교류·협력이 실현되면서, 남북기본합의서 규정에 입각한 여러 가지 후속합의들이 채택되고 있다. 또한 남북경제교류의 확대·발전을 위해 경협관련 기구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가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여기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남북한 당국간에 합의가 채택된 바 있다. 즉 2003년 12월 20일 채택된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 공동보도문 제3조는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경제협력에 필요한 법령 및 규정들을 상호 교환하기로 하고, … 산업재산권 문제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남북한은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와 제4차 회의를 통해 각기 상대측에 교환한 요구법령 목록에 모두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을 포함시켰다.²⁶⁾

한편 2000년 12월 16일 채택된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에서도 산업재산권 관련 권리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동 합의서 제1조 다항은 “투자자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속한다. (다)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의장권, 기술비결을 비롯한 지적재산권과 이와 유사한 권리”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에 비추어 이미 남북한간에 산업재산권 관련 교류·협력이나 저작권 보호에 대해 원칙적 합의는 이루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원칙적 합의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후속협회가 개시되지 못하고 있다.

26) 우리측은 제3차 회의 때 북측에 발명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의 제출을 요구한 반면, 북측은 4차 회의 때 우리측에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보호, 특허 등과 관련된 남측 법령의 제출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3. 지식재산권 교류·보호 등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과 처리 전망

위에서 지식재산권 교류 및 보호에 관한 남북한의 원칙적 입장과 관심도를 당국간 합의와 상대측에 대한 법령교환 요구를 통해 간단히 일별해 보았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그 이상의 보다 구체적인 태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필자가 남북회담사무국의 관계자들에게 문의한 바에 의하면, 지식재산권문제에 관하여 북한이 남북협상 과정에서 특기할 만한 언명(言明)을 한 것은 없다고 한다.

북한당국이 지식재산권분야의 남북교류와 관련해 대내적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 발표를 한 적도 없다. 단지 북한이 1998년에 발명법, 상표법 및 공업도안법을, 그리고 2001년에 저작권법을 제정한 것은 대외경제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적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한 면 외에도 향후 남북경제교류 확대시 지식재산권 보호문제가 등장할 것임을 예견하고 미리 법제도적 준비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북한이 산업재산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개념과 권리실행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지는 의문이다.²⁷⁾ 반면에 그 동안 북한저작물의 남한 내에서의 보호문제가 제기된 사실과 북한도 이를 잘 알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저작권 개념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이전보다 많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정부는 남북경제교류가 확대되고 남북경제교류가 본격화·활성화되려면 지식재산권의 보호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남북한 당국간 회담에서,

27) 다만 북한은 '산업재산권'에 해당하는 개념을 '공업소유권'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북한은 '지적소유권'에 대하여 "인간에 의하여 사상과 문학, 예술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루어진 지적창조물에 대한 소유권"이라고 정의하고, 지적소유권은 저작소유권과 공업소유권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저작소유권은 "문학예술분야의 재부에 대한 소유권을 말하며(보다 구체적으로는 사상, 문학예술분야에서 창조된 학술적 저작과 출판물, 소설, 시 등 문학작품, 미술작품, 연극, 영화, 음악, 무용 및 그 밖의 예술작품과 록음, 록화, 방송 등 예술적 활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재부에 대한 소유권이라고 한다.), 공업소유권은 과학기술분야에서 창조된 발견, 발명, 창의고안, 공업도안, 상표 같은 재부에 대한 소유권"이라고 한다. 사회안전부출판사, 『민사법사전』(평양: 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p. 573. 2002년 발간한 『국제법사전』에도 비슷한 설명이 발견된다.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국제법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2), p. 25. 하지만 이 같은 사전적인 정의와 별개로 북한이 대내적으로 산업재산권(발명권, 특허권)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가 하는 점과 이 분야에서의 대외 및 대남교류의 필요성 인식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나 남북경협제도실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도 기회있을 때마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의 당국간 회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문제를 계속 제기하여 북한측과 본격적인 협의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단지 개성공업지구 건설 및 우리 기업인들의 진출, 경의선 및 경원선 철도연결 등 보다 시급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²⁸⁾ 대북협상의 순위에서 잠시 뒤로 밀려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멀지 않은 장래에 지식재산권 기반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 차원에서 남북 당국간 대화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남북경협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향후 남북한 당국간에 남북교류협력분야 부속합의서 제2조 제2항의 이행·준수를 위한 세부합의서를 체결할 경우, 특허권, 상표권 등 과학기술상의 권리에 대한 상대측 권리 인정·보호,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 예방·해결절차 마련, 남북한간 특허 및 상표제도의 통일화방안 등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세부합의서를 체결할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포함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V. 남북한간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남북한이 모두 WIPO, 파리협약, 특허협력조약(PCT) 등 주요 국제협약의 당사국 이므로 법적으로는 “내국민 대우원칙”에 의거하여 각각 상대지역에서의 산업재산권 상호 출원 및 등록의 가능성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남북한이 모두 상대측 국적 명의의 출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북한이 체제 인정문제 등 정치적인 이유로 남한기업 및 주민의 직접적인 출원서 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⁹⁾ 또한 남북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민족내부관계임을 들어 국제조약의 남북간 직접적용을 부인하고 있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8) 예컨대 경의선 철도연결에 관한 합의서, 차량운행에 관한 합의서, 해운합의서들이 이미 남북한간에 생산되었다. 또한 개성공단 건설 및 진출도 조금씩 진척을 보게 되어 북한과 개성공업지구와의 통신·통행·통관 및 검역에 관한 합의서 체결이 실현되었다.

29) 장상해, “북한의 산업재산권,” p. 4.

아무튼 우리측 기업의 기술, 상표나 상호 등이 북한 내에서 등록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외국의 경쟁기업이나 제3자에 의해 동 기술이나 상표가 선점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이 점은 앞으로 원만한 남북경협 추진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한도 역시 「옥류관」,³⁰⁾ 「들쭉술」, 「신덕샘물」 등 정식 프랜차이즈가 라이선스(license) 계약 없이 남한기업에 의해 유통될 경우에 대비해서, 상표 또는 상호에 대해 적절한 재산권을 행사해야 할 필요가 등장하고 있다.³¹⁾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측 출원인의 북한에서의 산업재산권 직접출원 및 등록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일찍부터 북한은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재산권 출원의 문호를 개방했지만, 남한에게는 폐쇄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특허권의 경우, 기술적인 표준과 국가기술의 보호 등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적지 않다. 이 같은 점이 작용하여 아직까지 남한기업의 북한 내 출원등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상표의 경우, 당장 북한경제나 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타인지 출원등록이 조

30) 그 동안 남한 내에서 ‘옥류관’ 상표 사용과 관련해서 남북한간에 문제가 된 일이 있었다. 탈북자 윤모씨는 1998년 8월 ‘옥류관’ 상표권을 등록한 후 1999년 1월 조총련계 B무역과 함께 공동출자로 (주)옥류관을 설립하였다. 그런데 이모씨는 1999년 4월 윤씨에게 가맹비와 인테리어비 등 1억4000만원을 내고 서울 노원점과 성남 분당점 등 가맹점 설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북한당국이 방송을 통해 “남한 사람들이 평양옥류관 상호를 멋대로 사용한다” 고 보도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윤씨측의 매출이 급감하자 2001년 5월 영업을 중단하였다. “ ‘짜퉁’ 시비 식당 옥류관 거액 손배소 기각 ‘휴’ . ” 『문화일보』, 2003년 11월 25일자 참조.

31) 2003년 7월 16일 현재 특허청에 따르면 광복후 지난 1991년까지 북한의 산과 하천 등 지명에 대한 상표출원이 196건에 불과했으나, 남북대화 재개를 계기로 1992년 이후 현재까지 957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그 동안 출원된 총 1153건 가운데 평양과 영변·해주·개성 등 널리 알려진 지명을 상표로 출원한 것이 7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백두산 등 북한의 명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 269건, 아바이 등 북한의 일상용어를 포함한 것이 115건, 대동강 등 하천을 대상으로 한 것이 36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의 지명을 이용한 상표 중 백두산이 125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금강산 95건, 신덕 87건, 풍산 74건, 평양 68건, 함흥 66건, 개성 60건, 고산 46건, 송림 43건, 경성 34건, 옥류관 30건, 아바이 25건, 천지연 23건, 소백산 21건, 오마니 15건, 대동강 6건, 압록강 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허청의 실무자(상표3과장)에 의하면, “최근 남북 화해분위기의 영향으로 북한지명을 이용한 상표출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유명한 지명만으로 이뤄진 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상품의 산지표시에 해당돼 상표등록이 될 수 없으므로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갖춘 창작적 요소를 충분히 담아 출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한다. “북지명-사투리 상표 급증/금강산, 신덕, 아바이, 오마니.../91년까지 출원 196건 불과/92년이후 957건으로 늘어.” 『문화일보』, 2002년 7월 16일.

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나마 이것도 제3국을 통한 출원에 한하고 있다.³²⁾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중국·홍콩 등 제3국을 경유하여 제3국인 명의로 북한에 상표권 출원·등록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0년 5월말 현재 20여건의 상표출원이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³³⁾

이와 관련, 2000년 8월 6일자 KOTRA 분석보고자료(『국내기업의 북한상표 출원현황』)에 의하면, ‘동양제과’의 「오리온」과 「오리온 초코파이」 등 2건의 상표를 제3국인 명의로 북한에 출원하여 공식 등록한 적이 있다고 한다. ‘신세계’ 역시 제3국인(人) 명의로 「신세계」 및 「shinsegae」 상표를 북한에 등록하였다는 것이다. 「이-마트」도 상표를 출원 신청하였으나, 북한당국에 의해 거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³⁴⁾ 다만 이와 관련해서 이랜드와 경원엔터프라이즈가 최근 북한에 「E-LAND」와 「MIDAS」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³⁵⁾ 향후 북한의 처리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의 경우, 우리는 헌법상의 영토조항을 근거로 북한저작물을 남한주민의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과의 직접 계약체결이 어려워 남한주민에 의한 북한저작물의 무단활용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저작권과 관련해서 북한저작물의 불법·무단 활용사례에 대한 북한의 문제제기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남북간 계약체결 시에도 중개인 혼선 등으로 인한 분쟁사례가 증대하고 있다. 반면 북한의 남한저작권 침해가능성은 낮은 실정이다. 하지만 컴퓨터프로그램, 출판물, 가요, 방송 등의 무단활용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같은 점에 비추어 향후 남북간 저작권 상호 보호방안에 대한 검토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³⁶⁾

32) 북한은 1995년을 전후해 상표권에 한해서 제3국을 통한 출원만을 우리 기업에 대해 허용하고 있다.

33) 장상해, “북한의 산업재산권,” p. 4.

34) 박형일, “남북간 지식재산권 문제 협의방향.” 대한변리사회·한국발명진흥회 주최, 『한·중·일 특허공동체 필요성/남·북 지식재산권 기반조성』, 전문가토론회 발표문집 (2004.3.29), p. 62.

35) 최근 한국이 국제상표출원 관련 조약인 마드리드의정서에 2003년 4월 가입한 후 2건의 상표를 북한에 출원했다. 2004년 4월 8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랜드와 경원엔터프라이즈는 WIPO 국제사무국을 통해 각각 의류브랜드인 ‘E-LAND’와 무세계세탁기 ‘MIDAS’를 북한에 출원했다. 북한은 남북간에 합의서가 체결되지 않아 그 동안 한국기업의 상표 등록을 거부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북한도 마드리드의정서에 가입함에 따라 한국 상표도 북한에서 등록될 수 있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특허청의 실무자는 “마드리드의정서 가입국은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타국의 상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북한도 이를 깨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한에 첫 상표 출원 E-LAND, MIDAS,” 『한국경제신문』, 2004년 4월 9일.

VI. 남북 지식재산권 기반조성을 위한 실천방안

1. 기본방향

소위 선진 각국의 개방화, 세계화의 정책은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지식재산권 분야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지식재산권은 정보화, 첨단산업화 및 지식창조의 고도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의 지속적인 확대·발전 및 법적 보호는 중요하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무관심은 곧 첨단산업, 고부가가치산업을 선도하는 국제경제의 주류에서 밀려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21세기 정보화시대, 기술전쟁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의 기반을 강화하고, 계속 확충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반쪽인 북한은 아직도 산업화, 근대화도 이룩하지 못한 낙후된 국가로 남아 있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두고서는 민족의 재통합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우리의 생존마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의 경제심을 최소화하면서 남북통합을 원만하게 이룩하는 방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최근 북한이 가장 관심을 갖는 IT교류(정보통신교류)를 비롯한 남북경협이 가장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가령 IT교류는 첨단지식의 교류를 수반하는 바, 이는 북한 과학기술분야의 수준 향상을 요구할 뿐 아니라 필연적으로 지식재산권의 보호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여타의 남북경제교류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현 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하루빨리 남북한간에 지식재산권의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남북경협을 확대하는 길이며, 훼손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할 뿐 아니라 북한을 국제사회의 대열에 합류시키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유념해 앞으로 정부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북한당국자들의 경직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한편, 관련 법제도 인프라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

36) 동서독간에는 서독이 국내법에 의거해 동독저작물을 서독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한 반면, 동독은 베른조약에 의거해 서독저작물을 외국의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하였다. 중국-대만간에는 저작권에 관한 공식적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으나, 양쪽 모두 국내법 효력이 상대방 주민에게도 미친다고 보고, 각각 상대편 저작물도 국내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같은 시각에서 남북 지식재산권 기반조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지식재산권 기반조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인적·물적 교류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상호 신뢰의 기반을 마련한다.

둘째, 남북 지식재산권 기반조성을 위해 상호간에 정보교환을 추진하며, 관련 법제도 인프라 구축 및 정비를 위해 노력한다. 무엇보다도 산업재산권 보호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남북 당국간 합의서 체결에 주력한다.

셋째, 남북간 지식재산권 기반조성 차원에서 먼저 한·중·일간에 동북아 특허경제공동체를 구성하고, 북한의 호응 및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2. 세부 실천방안

1) 남북 지식재산공동체 및 정보공동체 형성을 위한 현장 마련

한반도의 안정화, 한반도의 민주화, 한반도의 시장화와 더불어 한반도의 지식사회화·정보화는 작금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대북정책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지식사회화·정보화는 북한의 대외개방 및 개혁을 촉진시키는 한편, 남북한간의 단일 시장화를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은 물론,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글로벌 한국’의 위상과 대외적 이미지 구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정부 또는 민간 차원에서 우리의 지식기반사회 건설을 기초로 한 남북지식공동체 혹은 남북정보공동체 형성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이는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우리의 입지와 위상을 잘 활용하는 현명한 대북정책이 될 것이다.

정부는 한반도의 지식사회화 혹은 남북지식공동체 형성,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정보공동체 건설을 위한 현장을 채택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점을 대내외에 천명해야 한다. 이와 관련, 중·장기적으로는 김정일의 서울답방을 비롯해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남북한의 두 정상이 한반도의 정보화 및 지식사회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선언하는 합의문 내지 공동발표문을 채택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물론 민간부

문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남북 지식재산권 인력들 간의 접촉 및 교류

우선 현단계에서는 남북한에서 지식재산권분야에 종사하는 정부 실무자 및 민간 전문가들간에 인적 교류를 조심스럽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기초로 적절한 시기에 남북한의 특허당국간에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 특허당국간 협의체는 별도의 합의서가 체결되기 전까지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나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위원회의 산하기구로 설치·운영함이 현실적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 밖에 민간 차원에서는 대한변리사회 소속 변리사들이 북한의 조선변호사회와 직접 대화채널을 개설하고, 산업재산권 보호 관련 업무에 관여하는 변호사들과 인적 교류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지식재산권 기반조성 차원에서 평양에서 전문가세미나를 개최하여 북한측에게 산업재산권 등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널리 확산시키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북한이 전문가들을 남한에 초청하여 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를 방문토록 하고, 지식재산권 업무처리 실태를 직접 눈으로 보여주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적 교류는 남북경협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교류 추진과정에서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해 기 조성되어 있는 남북협력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변리사회가 지금부터 통일부(사회문화교류국)와 긴밀한 협조를 하는 것이 요망된다.

3) 지식재산 교류 및 보호의 기반조성을 위한 남북인터넷교류 추진

지식재산 교류 및 보호의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남북인터넷교류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안보적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지금과 같이 남북한 주민 상호간에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인터넷에 의한 대북 접촉을 합법화할 경우, 건전한 대북교류 확대보다는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이 강화되거나 북한의 공작부서와 이에 동조하는 남한내 친북 좌익 세력간의 의견교환 통로만 합법화해 주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또한 남한주민이 북한측이 개설한 사이트에 일방적으로 접속하는 것이 허용될 경우, 친북성향의 국민이 북한 자료를 임의로 전송받거나 다운받아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나 이적단체의 사이트에 그대로 게시하여 무분별하게 북한의 사상을 전파하는 사례가 급증할 가능성도 있다.³⁷⁾

하지만 인터넷상에서의 북한주민 접속승인제를 폐지하자는 주장(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①인터넷 강국으로서의 정보통신 역량 활용, ②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지원, ③절차 간소화를 통한 국민의 편의 제고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도 시공을 초월하는 인터넷의 특성은 155마일 휴전선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교류협력의 장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고 있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남북한이 신뢰와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한반도에 정보화 사회 조기 정착과 민족 통합을 이룩함으로써 평화와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IT분야의 남북교류협력 이 활발히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인터넷상의 북한주민 접속에 대하여는 사전승인제를 폐지 또는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역량을 남북관계에서만 사장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를 통해 남북교류 활성화를 선도하는 것이 시대정신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⁸⁾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행 북한주민접속승인제 하에서 인터넷 접속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를 기반으로 해서 남북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점차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장기적으로는 가칭 남북 당국간에 ‘남북사이의인터넷교류를위한합의서’ 채택을 추진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합의서에는 ①남북간 인터넷교류의 민족내부교류성, ②남북간 인터넷통신망의 연결 및 운용, ③인터넷 통신망 장애제거 노력 및 통신망 장애발생시 신

37) 이승섭, “북한 인터넷접속 승인제 폐지안 검토-남북교류협력법 개정 공청회 관련-,”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2003.10.27) 참조.

38) 한나라당의 조응규 의원이 2003년 10월 27일 작성한 “남북교류협력법 공청회 관련 참고자료”와 같은 날 동인이 배포한 “공청회 발표문에 대한 견해” 참조.

속한 복구 협조, ④비상통신보장체계 수립, ⑤상대방 법률제도 및 국제관례의 존중, ⑥각기 자기측이 개설한 인터넷사이트의 IP주소의 임의변경 금지 및 사전통보 의무 명시, ⑦인터넷교류 관련 법률 및 정보 상호제공, ⑧남북정보통신기술의 제공 및 협력, ⑨합의 서상의 의무 위반 시 정당한 대응조치 강구, ⑩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 ⑪분쟁해결 장치 등을 규정하도록 노력 등을 명시할 수 있을 것이다.³⁹⁾

4) 남북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합의서 채택

남북 지식재산권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상호보호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가장 중요한 법제도 인프라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1) 남한기업의 특허 및 상표의 북한내 보호대책 마련

남한상품의 대북한 반출 또는 남한기업의 북한과의 임가공 교역 내지 합작투자가 본격화될 경우, 자본 및 신용과 직결되어 있는 남한기업의 특허권 또는 상표권의 북한내 보호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과거 미국이 구소련과 경제협력을 논의하면서 제일 먼저 요구한 중점사항 중의 하나가 ‘특허 및 상표제도의 서구화’였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단기적으로는 불충분하기는 하지만 일단 한국기업의 기술과 상표가 북한의 현행제도 수준의 보호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기술과 상표가 한국에서 보호받는 수준으로 향상·개선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간 특허 및 상표제도의 통일화를 기해야 한다.⁴⁰⁾

특허 및 상표제도의 통일화를 기함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은 남북한간

39) 제성호, “남북인터넷교류에 따른 법적 대응,” 통일연구원 내부발표문(미발간자료), 2004년 3월 16일, p. 9.

40) 장명봉, “남북 경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01 대북정책 과제에 대한 정책건의』 (서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01), p. 120.

에 특허와 상표 등 산업재산권의 상호 출원·등록을 인정해 주는 문제라고 하겠다. 우리 기업의 자본과 신용을 최소한의 수준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기업의 특허와 상표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은 곧 우리 기업의 특허와 상표를 각기 북한에 출원·등록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⁴¹⁾ 남북한이 모두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일명 파리조약)에 가입해 있고,⁴²⁾ 동 파리조약 당사국간에는 외국인에 의한 자국내 특허나 상표의 출원등록을 허용하고 있으므로(내국민대우의 원칙) 제도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특허권 보호를 위한 북한출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남북한간 특허 및 상표제도의 통일화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발명자 증제도를 폐지토록 함으로써 특허권의 내용을 특허만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요망된다. 아울러 남북한간에 특허 및 상표의 등록요건(불특허사유 포함)과 이들의 심사기준 통일, 권리보호기간 및 보호내용(국가수용사유 및 침해자 제재수준)의 일치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⁴³⁾⁴⁴⁾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앞으로 남북한 당국이 가칭 「남북사이의산업재산권보호에관한합의서」(또는 「남북사이의산업재산권분야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 체결을 강구해야 한다. 동 합의서에는 대략 ①산업재산권의 개념과 범위(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컴퓨터프로그램·반도체집 등), ②산업재산권 등록출원의 상호 인정, ③산업재산권 질서의 체계화·통일화 노력, ④상대지역 출원, 등록권리의 상호 보호 및 모방출원 방지, ⑤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의 상호 적용 및 성실한 이행, ⑥산업재산권 관련 법규 및 제도에 대한 상호 존중 및 긴밀한 정보교환,⁴⁵⁾ ⑦산업재산권 관련 인적·물적 교류 추진(기술교육·지도 및 산업재

41) 송만호, “북한의 상표와 특허제도 연구,” 『북한』, 1992년 4월호, p. 84.

42) 이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협약」에 의해 「산업재산권보호동맹」이라는 국제기구가 탄생하였다.

43) 송만호, “북한의 상표와 특허제도 연구,” p. 84; 한편 북한의 특허제도와 상표제도에 관해서는 송만호, “북한 특허법과 상표제도,” 『조선법률신보』, 1992년 8월 17일, p. 4 참조.

44) 제성호, 『남북경제교류의 법적 문제』,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137집 (서울: 집문당, 2003), pp. 172-173.

45) 이와 관련하여 남북한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교환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북한의 폐쇄적인 태도로 중요한 관련법령의 입수조차 어렵게 하는 현실에서 북한의 지식재산권제도에 대한 정보수집과 우리측의 일방적인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북한의 지식재산권제도의 내용 및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산권 관련 대북협력 포함), ⑧가칭 남북산업재산권교류협력위원회 설치·운영, ⑨산업재산권 기반확충을 위한 전산협력 및 정보인프라 구축, ⑩산업재산권 분쟁의 해결 등의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이다.

(2) 저작권 보호에 관한 합의서 채택

남북한간에 경제교류협력이 확대될 경우, 북한 저작물의 남한 내 보호 및 우리측 저작물의 북한 내 보호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저작권 보호는 저작자 개인의 재산권 보호 차원은 물론이고 남북한간의 언론 및 방송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남북한간에 호혜적인 저작권 보호질서를 세우려면 당연히 그에 관한 합의서 체결이 요구된다.

가칭 『남북사이의저작권보호를위한합의서』는 저작권 보호에 관한 실체법적 규정과 절차법적 규정으로 구성될 것이다. 실체법적 규정은 남과 북의 저작자에게 상대방 영역에서 주어지는 권리의 보장과 한계를 담게 될 것이다. 절차법적 규정은 구체적인 권리행사에 요구될 수 있는 행정절차와 분쟁 발생시 권리구제 절차를 명시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저작권 보호에 관한 합의서에는 ①저작권 보호대상, ②저작물 보호범위(1차적 및 2차적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와 비보호저작물, ③원저작권의 보호, ④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⑤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⑥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상속, ⑦공동저작물의 권리행사, ⑧저작물의 이용허락과 이용허락권의 양도, ⑨저작물 이용료의 지급의무, ⑩배포권의 소멸, ⑪저작인접권자의 지위와 권리, ⑫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⑬협의절차 및 저작권 분쟁의

예컨대 북한의 발명권의 개념과 발명권의 관계, 발명권을 강조하는 배경과 현실 등을 사회주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이를 분석하는 것은 우리의 산업재산권제도와의 차이점을 아는 동시에, 양자의 공통성을 찾는 초보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북한에 공인된 변리사가 존재하는지, 만일 없다면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들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통계수치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 이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사실관계 확인작업이 긴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하지 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보와 자료가 극도로 제약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남북 당국 간 합의서 채택 전이라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 북한의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 및 자료 수집에 나서야 한다. 가령 북한에서 발행하는 ‘발명공보’의 분석을 통해 북한의 특허등록 동향을 추적하는 것은 북한의 산업재산권 실재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박정원, “토론문,” 대한변리사회·한국발명진흥회 주최, 『한·중·일 특허공동체 필요성/남·북 지식재산권 기반조성』, 전문가토론회 발표문집 (2004.3.29), pp. 56-57 참조.

해결, ⑭다른 법 및 협정과의 관계, ⑮수정 및 발효에 관한 사항들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사이의저작권보호를위한합의서』의 실제법적 규정은 남북한 당국간의 이행의무를 발생시키는 약정으로서의 성격 뿐만 아니라 직접 제3자인 사인들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사법적 규정으로서 의미가 있다. 즉 사인은 동 합의서를 근거로 직접 상대방의 주민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의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남한 또는 북한 당국에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저작권의 내용으로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보장하는 조항은 절대권으로서 제3자들이 존중하여야 할 권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어서 당사자들의 계약에 대하여 강제적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⁴⁶⁾⁴⁷⁾

(3) 합의서 체결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우리 정부는 통일에 대비한 지식재산권 기반조성의 일환으로 남북 당국간 대화를 통해 산업재산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에서 남측 기업의 투자 활성화, 출원 및 등록의 상호인정에 따른 경제적 이익, 국제적 신뢰 제고, 현행 제도 하에서 교류협력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북한당국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남북교류협력분야 부속합의서의 관련 규정의 유효성을 재확인하고, 북한측에 상호출원 및 보장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남북간에 가능한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분야를 제시함으로써 북한측의 호응을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측의 반응을 보아가며 남북한 산업재산권 상호보호 및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남북사이의산업재산권보호에관한합의서』 체결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측은 남북 당국간 회담(‘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에서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단기적으로 실현가능한 세부적이고 구체화된 교류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상호출원 인정 및 등록보장, 권리의 모방 출원 및 등록 방지방안 마련, 정보자료 교환 및 인적 교류, 공동 발명전시회 개최, 산업재산권제도 공동연구 등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장기

46) 남북한 주민간의 저작권계약에서 임의적으로 권리를 새로이 창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동일성 유지권’의 인정, 그 내용과 범위가 문제될 수는 있을 것이다.

47) 제성호, 『남북경제교류의 법적 문제』, pp. 170-171.

적으로는 남북한간에 관련 용어 및 법령, 심사관행 등과 관련된 양측간의 차이점 제거,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을 위한 절차 마련 등 남북간 산업재산권 제도의 접근을 신중하게 모색해 나가야 한다. 산업재산권 분야 교류협력 및 상호보호에 관한 남북간 협상창구와 관련해서는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외에도 앞으로 구성될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활용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 문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에 상응하는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한 후 이 기구를 통해 논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 2003년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기간 중 양측은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를 구성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⁴⁸⁾ 그러나 아직까지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는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앞으로 정부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동 기구의 설치문제를 계속 북한측과 논의토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리 국민이 북한 저작물을 반입할 때 기급적 북측 당사자와 직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남북간 계약의 효력 담보 차원에서 북한측의 공식 확인서를 반드시 수령하도록 계도해야 한다. 또한 북측과 정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북한저작물을 활용하고, 북한주민 접촉 및 물자반입 관련절차를 준수토록 홍보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 북한측이 제3국 대리인을 통해 저작권사용료를 요구할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만일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국내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⁴⁹⁾

5) 지식재산권 관련 대북 기술지도 및 시범적 협력사업 추진

특히청, 대한변리사회 혹은 한국발명진흥회 등이 초기의 단순한 인적 교류에서 더 나아가 산업재산권분야에서 북한측에 기술교육 및 지도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관광부나 대표적인 분야의 저작권협회 등도 북한측에 대해 저작권분야에서 북한측에 필요

48)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 『남북대화』, 제69호 (’02.12-’03.11), pp. 35-40 참조.

49) 박형일, “남북간 지식재산권 문제 협의방향,” p. 63.

한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지식재산권분야에서의 물질 토대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2002년 여름 한양대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2명이 북한의 김책공대에서 2개월간 컴퓨터관련 강의를 한 적이 있다.⁵⁰⁾ 이러한 선례를 지식재산권분야에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즉 지식재산권분야의 실력있는 교수, 전문가들을 선발해서 김일성대학의 법학부나 관련 학과에서 과학기술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 있는 자본주의 법제도와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지식, 기타 국제적 협력추세 등을 북한 대학생들에게 강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남북교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는 남북 합작방식에 의해 가칭 ‘통일특허정보센터’를 설치해 국내외 기업에 대해 특허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물질 교류 차원의 시범적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정보센터를 확대·개편해, 실용신안, 의장, 상표,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칩 등으로 그 정보제공의 범위를 넓혀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북한 대학생들이 산업재산권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물질 교류와 인적 교류를 접목시키는 모범적인 남북교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6) 한·중·일간의 ‘동북아특허공동체’ 형성 및 북한의 참여 유도

금년 3월 1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변리사회장 모임’에서 참가자들은 오늘날 지식 기반사회에 자주 발생하는 국제특허분쟁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였고, 더불어 한·중·일 3국간에 특허공동체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한다. 이는 앞으로 ‘동북아특허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작지만 의미있는 사건이었다고 하겠다. 만남에서 관계가 싹트고 이 관계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중·일 3국간에 특허경제공동체가 형성되면, 여기에 러시아 극동지역, 몽골, 대만, 홍콩, 필리핀 등도 추가로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동북아특허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50) “한양대 오희국·차재혁 교수 북김책공대서 강의,” 『조선일보』, 2002년 8월 27일자; “한양대 학교 교수들, 북한서 강의,” 『유뉴스』, 2002년 7월 12일자 참조.

가능하게 될 것이다.⁵¹⁾

적절한 시기에 ‘동북아특허공동체’에 북한을 가입시키면, 이러한 공동체는 완성을 보게 될 것이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멀다. 하지만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을 통해 동북아경제협력이 심화되고, 나아가 동북아에서 특허공동체가 형성되게 된다면, 이는 동북아지역에서의 경제·과학·기술 발전과 복지향상을 촉진시키게 될 것으로 내다 보인다.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 지식재산권분야나 과학기술협력을 레버리지로 잘 활용해 북한을 ‘동북아특허공동체’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평화변영정책, 특히 ‘동북아경제중심’ 건설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전향적이고도 바람직한 조치라고 하겠다.

VII. 결 어

본고에서 남북통일에 대비한 지식재산권 기반조성방안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남북한간에 통일적인 지식재산권 기반조성 혹은 지식정보화사회의 실현은 민족통합을 위해 반드시 이룩되어야 할 과제이다. 여기에는 법적·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 과학기술적 측면 등이 개재되어 있다. 또 정부가 해야 할 분야가 있고 민간부문이 담당해야 할 분야도 있다. 앞으로 남북 지식재산권 기반조성의 과제가 안고 있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가장 적실성 있는 실천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우리 정부가 하루빨리 남북한간에 지식재산권의 기반조성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정부가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교류방안을 제시하였다. 그것들은 ①남북 지식재산공동체 및 정보공동체 형성을 위한 현장 마련, ②남북 지식

51) 동북아특허공동체 형성 추진시 정부간 논의에 앞서, 그리고 매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주제에 대하여는 수요자의 필요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집단인 대한변리사회가 주축이 되어 다출원기업, 연구소를 포함한 민간기구들과의 논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접근전략을 통해 한국이 동아시아 신기술 보호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희, “한·중·일 지식재산공동체 기반조성을 위한 준비,” 대한변리사회·한국발명진흥회 주최, 『한·중·일 특허공동체 필요성/남·북 지식재산권 기반조성』, 전문가토론회 발표문집 (2004.3.29), p. 12.

재산권 인력들 간의 접촉 및 교류, ③지식재산 교류 및 보호의 기반조성을 위한 남북인터넷교류 추진(특히 인터넷 접촉승인제 폐지 또는 개선), ④남북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합의서 채택, ⑤지식재산권 관련 대북 기술지도 및 시범적 협력사업 추진, ⑥한·중·일간의 ‘동북아특허공동체’ 형성 및 북한의 참여 유도 등이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보다 다듬으면 각 분야에서 보다 실현가능하며 타당성이 있는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에서 적시한 남북 지식재산권의 기반조성방안은 이정표 성격을 갖는 하나의 방향 제시에 불과하다.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빠른 시일 안에 한반도의 정보화 및 과학기술분야에서의 남북간 법적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 글을 마치기로 한다.